

교수회 의장 및 위원장 선출 세칙

제 정 2016. 2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우송대학교 교수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권자) 선거권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. 단, 파견, 휴직 등의 사유로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.

제3조(피 선거권자) ①본회의 회원 중 재임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외국인 교원은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산정은 선거인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④선거일 현재 교무위원은 피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.

제4조(선출방법) ①의장은 각 단과대학별 1인을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교수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의장의 선출은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.

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5조(선출시기) 본회의 의장 선출은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본회 의장의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제6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의장 등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선관위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선관위는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구성해야 한다.

③선관위는 교수회에서 선출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며,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
④선관위는 당해 선거업무가 종료하면 자연적으로 해산한다.

제7조(선관위의 업무와 권한) ①선관위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선거일시와 장소의 공고

2. 선거인 명부작성

3. 투표 및 개표의 관리

4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

②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
1.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

2. 투표지의 유효여부 판정

3. 선거와 관련된 이의 심사 및 판정

4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

제8조(선거공고)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에 전 회원에게 선거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후보자 등록) ①후보자의 등록기간은 투표일 15일에서 10일 이전까지로 한다.

②후보자의 등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.

③후보자의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추천으로 결정한다.

제10조(선거운동) ①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공고 직후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.

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소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소견발표의 절차와 방법 . 선거운동 금지사항 및 제재조치는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투·개표의 절차와 방법) ①선관위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개표 시에는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 1명씩을 참관시킬 수 있다.

제12조(당선자 확정) ①당선은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.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②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